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의안 번호	1931
----------	------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6일

발 의 자 : 송아량, 정지권, 이병도, 한기영,  
이광호, 임종국, 김태호, 박기재,  
송정빈, 성중기, 이은주, 정진철,  
추승우, 이승미 의원(14명)

## 1. 주 문

-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와 질서문란 행위를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 운영기관에서는 2011년부터 지하철보안관 제도를 운영하여 철도안전법 등 관련 근거에 따라 무질서 행위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관련 성범죄 등은 해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지하철보안관에게는 실질적인 사법경찰권이 없어 범죄 발생시 현장검거 등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할 것임. 경찰에 신고하는 수동적인 대처만으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자체적인 사법경찰권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지하철보안관 및 도시철도 운영인력 등에 사법권을 부여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것임

## 2. 제안이유

- 서울 지하철은 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이지만 성범죄·폭행·노숙인 난동 등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와 질서문란 행위들로 인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서울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는 2011년부터 지하철보안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총 275명이 근무 중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지하철 내 물품판매, 불법전단지 배포 등 무질서 행위들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특히, 해마다 성범죄, 절도 등의 범죄는 2천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법경찰권이 없는 지하철보안관으로 각종 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하철 탑승객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마스크 미착용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이 매우 중요한 업무이지만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지 않아 실질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최근에는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인한 폭행사건도 발행하고 있음
-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국가직공무원의 신분으로 사법경찰권을 통해 철도범죄 예방과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서울 도시철도를 관리하는 지하철보안관 등에 사법경찰권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각종 질서문란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지하철보안관 등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나. 기 타 : 없음

### 4. 이 송 처

가. 국 회 :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나. 정 부 : 국토교통부, 법무부

5. 불 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서울 지하철은 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이지만 성범죄·폭행·노숙인 문제 등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와 질서문란 행위들로 인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는 2011년부터 지하철보안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총 275명이 근무 중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지하철 내 각종 범죄와 물품판매, 불법전단지 배포 등 무질서 행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해마다 성범죄, 절도 등의 범죄는 2천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법경찰권이 없는 지하철 보안관으로 해당 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하철보안관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관리 인력에 경찰사법권 부여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하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 등을 해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권이 없어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고 최근에는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인한 폭행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국가직공무원의 신분으로 사법경찰권을 통해 철도범죄 예방과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서울 도시철도를 관리하는 지하철보안관 등에는 사법경찰권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각종 질서문란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관리 강화 측면에서도 지하철보안관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직원 등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하철보안관에 대한 사법경찰권에 준하는 권한 부여.

둘째, 서울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임직원 및 관련 직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2020. 1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